

---

#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

---

2013. 9. 26

금 융 위 원 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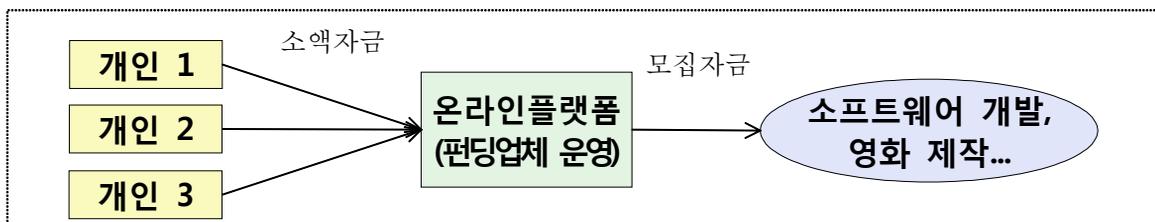
# 순 서

I. 클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요 .....	1
II. 제도 도입 추진배경 .....	2
III.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.....	3
IV. 기대효과 .....	6
V. 추진계획 .....	7

# I.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개요

- 크라우드펀딩(crowd-funding)은 일반적으로
  -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
  - ② 중개업체(펀딩업체)를 통해
  - ③ 온라인(on-line)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
  - ④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

<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>



-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·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

< 크라우드펀딩 유형 >

유형	자금모집방식	보상방식	주요사례
· 후원·기부형	후원금·기부금 납입	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	주로 예술, 복지분야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
· 대출형	대부	유상(이자지급)	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시 활용 (대부업체 중개)
· 투자형	출자(지분취득)	유상(이익배당)	창업기업 등이 자금 조달시 활용

## II. 제도 도입 추진배경

-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
  - 현재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,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, 충분치 못한 실정
    - \* 엔젤투자 추이(억원): ('06) 971 → ('08) 492 → ('10) 326 → ('11) 296 → ('12) 138
    - \* 벤처캐피탈의 창업 1년내 기업 투자비중(%) : ('10)13.8→('11)13.9→('12)11.3
  -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병행하여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 줄 필요
    - 또한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선의의 창업기업가를 보호할 필요
  - 한편, 과거와 달리 인터넷·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
    - 미국(JOBS Act), 이탈리아(Growth Decree), 영국, 일본 등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검토·추진중
- ※ 참고 :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 사례

### Ⅲ.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

#### 〈 기본 방향 〉

- ◆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
  - \* 후원기부형, 대출형은 시장 자율 또는 여타 법규에 의해 규율
- ◆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,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
  - 중개업체의 진입요건,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하되
  - 1인당 투자한도, 모집금액 한도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

#### 1. 제도의 기본 틀

- (규율대상)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
  - 증권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“공모”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
- (규율방식) 증권발행인(창업기업가 등)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”를 신설
  - 同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시 준수할 사항(투자한도, 투자정보 제공 등)의 이행력을 확보

→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요건 및 업무 방법, 규제사항, 제재수준 등을 규정

## 2.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

- (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

\*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

- (공시규제의 완화)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\*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

\*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,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

-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이 크게 완화

- (발행가능 증권의 다양화)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·채무·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

- (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)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기간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발행인(창업기업 등)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

\* 일반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되나,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허용 (단,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투자정보를 정정게시토록 함)

### 3.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
- (투자금액 제한)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
  - \* (예시) 1인당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
-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
-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“십시일반”으로 자금을 모집 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
- (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)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·신탁
- (증권발행의 취소)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(예:90%)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
- (핵심정보의 제공)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
  - \* 증권의 발행조건, 기업의 재무상태, 사업계획서 등
- 중개업자에게 게재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부과
- (손해배상책임) 허위·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 부과
- (증권의 예탁의무)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, 일정기간 매도 금지(대주주,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)
  - \* 증권의 유통을 제한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의 유통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

## 4. 기타 무분별한 영업행위 방지 장치 마련 등

- (투자권유·광고제한)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를 금지하고, 증권 발행인·중개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\*을 규정
  - \* (예시) 광고수단, 광고시 기재사항 등
- (중개업자의 행위제한 등) 이해상충 방지, 투자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자체투자, 투자자문 금지
  - (자체투자 금지) 본인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투자 금지
  - (투자자문 금지)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,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행위 금지
  - (투자위험 확인의무) 투자자가 청약내용, 투자위험, 기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투자자에 대한 중개를 금지

## IV. 기대효과

---

- ①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
  -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
  -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
- ② 투자자 피해 예방
  -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줌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
- ③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
  -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

## V. 추진계획

---

### □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 경주

-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,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
-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입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

### □ 하위규정 신속정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

-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,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
- 가급적 내년중에는 창업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

① **[미국]**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JOBS Act(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) 제정 ('12.4월)

\* ('12.3.22일) 상원승인 → (3.27일) 하원통과 → (4.6일) 오마바 대통령 재가

- 현재 JOBS Act 시행을 위한 SEC의 관련 세부규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

※ JOBS Act 주요내용

- ◇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에 '크라우드펀딩' 추가
- 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 정보공개 의무화, 손해배상책임, 투자자에 대한 연간 투자금액 한도 등의 장치 마련

② **[이탈리아]** 「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」(Growth Decree)에서 크라우드펀딩 합법화 승인('12.10월)

- 펀드 플랫폼 및 관련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(CONSOB)가 담당

※ Growth Decree 주요내용

- ◇ 창업회사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을 공동투자자로 하여 정해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 자금조달 가능
- ◇ 하이테크 상품 및 혁신 관련 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, 사업 업력은 4년 미만, 년매출 70억 기업으로 발행인 한정

③ **[영국]** 금융규제청(FCA)은 '13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안채널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('12.10월)

- 이에 따라, 금융청(FSA)은 최초로 CrowdCube社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중개업체로 인가 ('13.2월)

④ **[일본]** 금융청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('13.3)